

의안번호	2219980
의 퇴 인	김소희 의원
회 답 일	2026.8.19.
추계번호	26B35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u>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u>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 <u>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u> (제1항)	의무·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u>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선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 (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항)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 미대상 -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있어 주휴수당¹⁾을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²⁾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의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³⁾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

-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라고 함
- 2)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에는 업종을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정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업종의 구분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이 달리 정해지고 사업장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여부와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사업대상자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임금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4) 당시 업종을 1군(식료품, 섬유, 전자기기 등 12개 업종), 2군(담배, 산업화학, 정밀기계 등 16개 업종)으로 나누고, 1군은 시간당 462.5원, 2군은 487.5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